
K-AI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캠퍼스 AI 네트워크 실증과제
공모 안내서**

2026. 5.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목 차

I. 과제 개요	1
1. 추진 배경	1
2. 과제 목표	1
3. 추진체계 및 일정	2
4. 기대효과 및 성과계획	4
II. 과제 내용	5
1. 캠퍼스 AI 네트워크 구축·운영(1차 연도)	5
2. K-AI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지원(1·2차 연도)	9
3. 캠퍼스 AI 네트워크 기반 혁신 AI 서비스 실증(2차연도)	11
4. 캠퍼스 AI 네트워크 확산 및 고도화(2차연도)	12
III. 과제 제안	14
1. 과제 지원사항	14
2. 과제 추진일정	16
3. 과제 선정방안	17
4. 과제 신청방법	20
5. 과제 관리방안	22

〈별첨〉

1. 과제 제안서 양식
2. 과제 관리 규정 및 지침(관련 서식 포함)

1. 과제 개요

□ 추진 배경

-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라 통신망의 지능화·자동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차세대 이동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한 5G 특화망 (이음5G) 기반 AI-RAN* 핵심기술 확보 및 실증 기반 마련 필요

* AI가 RAN 운용 의사결정에 직접 반영되고, AI 워크로드와 RAN 기능이 공동 인프라에서 운용되며, 그 결과가 성능·에너지·서비스 수용성 지표로 검증되는 기술을 의미

- AI-RAN 실증 인프라를 통해 기존 RAN 환경에서 구현이 어려운 퍼지컬 AI, 로봇, XR, 실시간 영상분석 등 혁신 AI 서비스 모델을 발굴·검증할 필요가 있음
 - 5G 특화망은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특성을 바탕으로 폐쇄형 자가망 구축이 가능하며, 보안성, 망 운용 유연성, 현장 맞춤형 설계 측면에서 교육·연구 환경에 적합함
 - 교육·연구 환경은 다양한 단말과 장비, 연구데이터가 집적되는 구조로, 5G 특화망과 AI-RAN 기술 융합을 통한 고신뢰·지능형 교육환경 구현과 네트워크 AIOps(AI for IT Operations) 기반의 운영 효율화·품질 고도화, 신규 AI 기반 서비스 발굴에 유리함
- ⇒ 산·학·연 협력 기반의 캠퍼스 실증을 통해 민간 대·중·소기업의 기술 실증 사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과 사업화 기반 조성이 필요함

□ 과제 목표

- 5G 특화망 기반 AI-RAN 실증 인프라를 구축·운영하여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혁신적 AI 융합 서비스 모델을 발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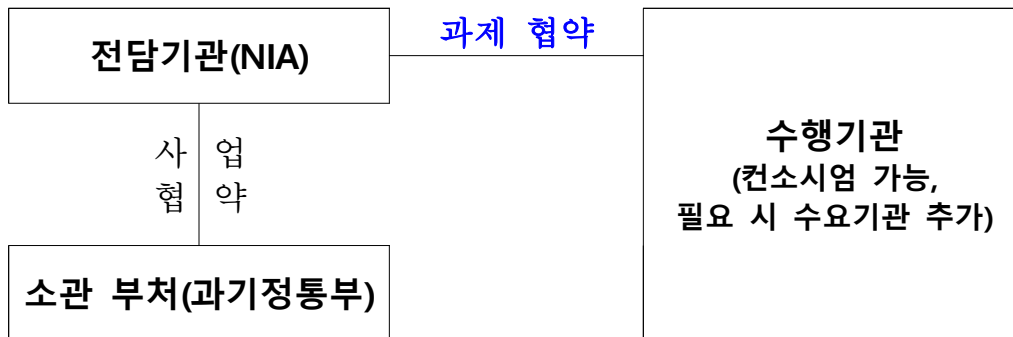
- 대학 캠퍼스*를 차세대 네트워크와 AI 융합 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고, 산·학·연 협력 기반의 실증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화 기반 마련을 지원

* 대학의 연구자와 정보통신 담당부서가 수행기관이나 수요기관으로 참여할 필요

- 또한 교육·연구 환경에 적합한 고신뢰·지능형 네트워크 운영모델을 확립하여, 향후 공공·산업 분야로 확산 가능한 선도 사례를 창출

□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안)



○ 주요역할 및 관련용어의 정의

- **전담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하 NIA)
 - 소관 부처와의 협약에 의하여 과제를 주관하여 추진·관리
- **수행기관**
 -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 등을 통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 과제 수행기관과 참여 과제수행기관을 통칭
 - **주관 과제수행기관**(이하 주관기관)이란 수행기관이 다수인 경우, 과제 신청·관리 및 실적보고와 정산 등 해당 협약과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과제수행기관을 통칭함
 - **참여 과제수행기관**(이하 참여기관)이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수요기관

- 과제에 참여하여 과제 수행의 결과 발생하는 유·무형의 결과물 또는 서비스를 수요자로서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기관을 말함
- ※ 수요기관은 민간부담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전체 지원금 비율 산정에 해당하지 않음)

- 위탁용역기관

- 과제수행의 과제내역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총괄책임자

- 주관 과제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말함

- 비영리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하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은 영리기관으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ICT 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인 법인
-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

- 과제비

- 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정부예산으로 교부되는 지원금과 과제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

- 민간부담금

- 과제수행기관이 과제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함

□ 기대효과 및 성과계획

○ 기대효과

- (핵심기술 자립기반 확보) AI 인프라와 RAN 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AI-RAN 분야의 핵심기술 자립기반을 확보, 국내 기술·제품의 상용 적용 레퍼런스 축적과 공급망 안정성 강화로 AI 시대 국가 경쟁력 제고
- (첨단장비 수출 기반 마련) AI 기반 무선망 및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등 차세대 기술의 실증·검증을 통해 국내 통신장비·SW 기업의 기술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기반 마련

○ (성과계획) 본 과제 추진에 따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측정

성과지표	'26년 목표치	'27년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출처
국산 장비·솔루션 기반 산학연 공동 AI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2건	-	Σ당해 연도 플랫폼 구축 건수	결과보고서 (장비도입확인서)
국산 장비·솔루션 기반 산학연 공동 AI 네트워크 플랫폼 고도화**	-	2건	Σ당해 연도 플랫폼 고도화 건수	결과보고서 (장비도입확인서)
혁신 AI 서비스 모델 발굴	3건	-	Σ당해 연도 모델 발굴 건수	결과보고서 (구축시연)
혁신 AI 서비스 모델 실증	-	4건	Σ당해 연도 모델 실증 건수	결과보고서 (구축시연)
산학연 공동 AI 네트워크 플랫폼 활용	1,000명	2,000명	Σ당해 연도 플랫폼별 수용 가능 이용자 수	결과보고서 (시험결과서)
네트워크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용 토큰 생성	3,000억 건	3,000억 건	Σ당해연도 패킷 로그 기반 토큰 생성 수	결과보고서 (구축제공)

* 표. 과제 내용의 1차 연도 과업(캠퍼스 AI 네트워크 구축·운영)

** 표. 과제 내용의 2차 연도 과업(캠퍼스 AI 네트워크 확산 및 고도화)

※ 위 목표치는 본 과제에 참여하는 수행기관별 최소 목표치임

- 상기 성과지표는 과제 수행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과제 제안사는 기술적·시장적 측면에서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추가로 설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II. 과제 내용

공통 요구 사항

1. 제안내용은 본 과제의 내용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계량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화·계량화되지 않은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제안내용에는 과제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추진내용, 수행체계, 연차별 추진일정 및 세부 추진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3. 제안내용에는 과제수행에 따른 성과목표, 성과지표, 산출근거 및 측정방법을 포함하여야 하며,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정량적·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4. 제안내용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최소 2년간 성과 활용 및 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5. 제안내용에는 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산업·사회적 파급효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계량화된 수치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 제시하여야 함.
6. 본 공모안내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과제목표 달성, 성과 확산 및 사업화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캠퍼스 AI 네트워크 구축·운영(1차 연도)

○ 기술·시장 분석 및 실증 방안 도출

- 국내·외 AI-RAN, 피지컬(에이전틱 등) AI 관련 시장 규모, 기술·실증 동향, 표준화 및 정책 방향을 종합 분석, 주요 사업자·장비·솔루션·표준·기기 등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를 파악하여 그 결과와 과제 목표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여야 함
- 동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피지컬 AI 기기 및 운영 규모, 연동·구축 장비 사양, AI-RAN 솔루션, 서비스 배포·학습 체계, 커버리지 등을 포함한 실증 구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과제 목표에 따른 실증환경 구축 방안은 2개소 이상 제안하여야 하며(해당 실증환경은 별개의 대학 또는 동일 대학의 상이한 캠퍼스를 대상으로 구성), 구축 대상지는 AI 네트워크를 국산 장비·솔루션 기반의 산학연 공동 AI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함

- 이때 5G 특화망 수요, 수용 규모, 서비스 파급력, 시연 가능성뿐만 아니라, AI-RAN 기반 저지연·엣지 AI 서비스 구현 가능성, 국산 장비·솔루션의 연동·확장성, 산학연 공동 활용성, 실증 이후 확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실증장소는 교육기관(대학 캠퍼스)을 우선 대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커버리지 확보, 학생 등 실제 서비스 이용자 기반 확보, 다양한 단말·트래픽 환경에서의 AIOps 기반 운영·품질 최적화 실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1) 반복 실증 가능성, 2) 통제된 운영환경, 3) 산학연 연계 용이성, 4) 개방성 및 확장성 (로봇·모빌리티 등 피지컬 AI 실증 여건) 등을 감안

○ AI-RAN 망 설계, 장비 도입, 구축·운영 방안 제시 및 수행

- 과제 목표 및 실증 방안에 따라 **AI-RAN 기반 망 설계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지국 위치·수량, 설치 자재, 설치 공법, 현장실사 등 네트워크 계획을 수립한 뒤 **실제 구축을 수행**하여야 함

- 망 구축·운영에 필요한 장비·솔루션 및 물자 조달계획을 제시하고, 장비 보유·구매계획, 국산 제품 활용계획, 조달 지연 리스크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실제 조달·납품·설치를 수행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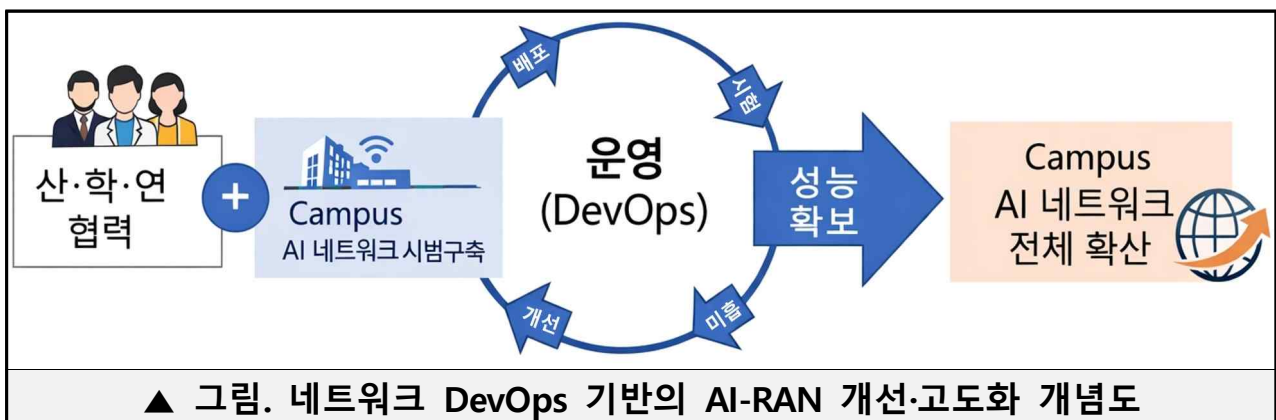
※ 이음5G 서비스 커버리지는 1개소 당 최소 1개 단과대학 또는 복수 건물이 위치한 구역으로 제시

※ 이음5G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백홀(Backhaul)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 시 차세대 네트워크 선도 연구시험망(KOREN)의 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

- AI-RAN 기지국(실증환경 개소별로 다른 장비사 구성(멀티벤더) 필수,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통한 교차검증을 권장)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성 및 기술요건, AI·통신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구축·통합, 장비 간 연동, 시험·최적화 등 단계별 구축·운영 계획(통신·AI 워크로드 통합 운영 구조)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실증망 구축, 연동 검증, 성능 최적화 및 운영을 수행하여야 함

※ AI-RAN 기지국 구축 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 구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해, 국내·외 협력체의 활동을 참고할 수 있음

- AI-RAN 실증 방안을 고려한 이음5G 주파수 확보·이용 방안 제시
 - 실증 모델에 적합한 이음5G 도입유형, 도입 일정, 운영주체, 서비스 제공 대상, 도입방식 및 주파수 공급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 AI-RAN 최적화 및 확장성을 고려한 기지국 아키텍처 제시 및 구축
 - 여러 대의 AI-RAN 기지국 장비를 클러스터로 구성하고, 복수 장비 및 가속자원에 대한 통합 관리, 스케줄링, 확장 제어가 가능한 아키텍처를 제시해야 하며, 복수의 CU 또는 DU를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통해 실증 환경에서 RAN의 목표 성능 수준을 충족하면서 AI 서비스 병행 처리, 자원 재배치, 제한적 장애 대응이 가능한 구조를 검증
 - 통신 부하와 AI 연산 수요에 따라 기지국 내 유휴 자원을 동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기존 고정 자원 할당 방식 대비 자원 활용 효율, 확장성 및 운영 유연성을 실증
 - 향후 다양한 AI 서비스와 네트워크 기능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AI for RAN, RAN for AI를 지원하는 개방형 API 및 범용적 실행환경을 고려하여 구축
- (AI for RAN) DevOps 기반의 AI-RAN 개선·고도화



- AI-RAN 기지국 장비, AI 가속장비, 엣지·클라우드 서버,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전송망 장비 등을 대상으로 과제기간 내 지속적인 운영, 검증, 개선 및 고도화를 수행하고, 운영데이터 및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AIOps의 모니터링, 장애 예측, 품질 최적화, 자원 제어 및 운영자동화 기능을 고도화하여 AI-RAN 인프라의 성능과 운영 효율을 제고
 - AI-RAN 실증환경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가 필요한 장비·솔루션·서비스의 실증 및 지원 방안을 제시
 - 운영·검증·개선·고도화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KPI를 직접 설계하고, 각 지표별 정의, 측정방법, 산정방식, 목표수준 및 검증방안을 제시·수행
 - 통신 인프라 운용 및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2개 연도 이상의 연차별 수행계획을 과제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주체별 책임·역할, 비용 분담, 모니터링 및 매니지드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인력 투입계획, 수요기관 기술교육 계획을 포함
- (AI on RAN) 실시간·현장형 혁신 AI 서비스 모델 발굴
- 구축된 개방형·지능형 AI-RAN 환경을 기반으로, 피지컬 AI 등 혁신 AI 서비스*의 필요성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시나리오 3종 이상을 제시**(발굴 및 도출)하여야 함
- * AI-RAN의 저지연·고신뢰 통신, 다수의 디바이스 동시 수용, 엣지 AI 처리를 기반으로, 실시간 제어, 이동성 지원, 서비스 연속성 측면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피지컬 AI-로봇 등 차세대 AI 서비스를 의미(예시: 군집로봇 등 초저지연·고신뢰 통신이 필요한 AI 기반 로봇 서비스)

□ K-AI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지원(1·2차 연도 동일)

- 국내 AI-RAN 생태계 조성 및 통신 공급망 확보·강화를 위한 시장참여자 간 협력체계 구축
 - 사업자, 중견·중소 장비 제조사, 유관기관 및 협회 등 시장참여자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개방형·지능형 기지국 협력 활성화를 위한 동 실증, 기술 검증, 사업화·수출 연계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원 방안을 제시·수행하여야 함
- AI-RAN 표준화, 상호운용성 및 확장성 확보 방안 제시 및 수행
 - 구축한 개방형·지능형 기지국 장비 및 솔루션이 최신 AI-RAN 관련 표준, 참조 아키텍처 및 기술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험·검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과제 결과에 기반한 리서치 보고서 제작 및 발간
 - 과제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AI-RAN 기지국, 혁신 AI 서비스 모델, 시험·검증 결과 및 대표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리서치 보고서를 제작·발간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사업 추진 개요, 정성·정량 추진 성과, 기술적 달성 목표 및 결과, 시험·검증 결과, 주요 시사점 등을 포함한 기술·시장 분석 문서로 구성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과제기간 중 리서치 보고서의 목차 및 구성안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제작, 발간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하며, 아울러 보고서의 대외 확산을 위하여 AI-RAN, 이동통신, 네트워크, AI 융합서비스 관련 학회, 세미나, 포럼, 기술 워크숍 등 적절한 발표·배포 채널의 유형과 성격을 구체화하고, 기획·주선·실행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과제 성과 온·오프라인 전시·홍보 방안 제시 및 수행

- 수행기관은 AI-RAN, 5G-Advanced, 차세대 이동통신, AI 융합 네트워크 관련 국내·외 학회, 컨퍼런스, 세미나, 포럼, 기술 전시회 등 적절한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발굴하고, 과제 성과의 기술 확산 및 산업 연계를 위한 참가, 발표, 국내·외 전시(각 1회)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전시·홍보 내용은 단순 과제 소개를 넘어, AI-RAN 기지국, 혁신 AI 서비스 모델, 시험·검증 결과, 상호운용성, 확장성,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시장참여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온·오프라인 채널별 목표와 대상, 기대효과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

○ AI-RAN 등 K-AI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

- 수행기관은 국내·외 협력체, 표준화·산업 협력기구, 유관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국내 AI-RAN 생태계 조성, 기술 확산, 공급망 연계 및 글로벌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과제 성과활용 기간(마지막 과제 협약 종료 후 2년) 중 과제 결과 및 시험·검증 성과에 대한 설명, 발표, 기술 공유 등 국내·외 제반 활동을 지원
 - 이를 통해 국내 AI-RAN 기술·제품의 신뢰성 확보, 해외 협력 채널 발굴, 후속 실증 및 사업화 연계, 해외 수출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영문 브로슈어, 국제 행사 배포자료, 해외 파트너 대상 설명자료 등)

※ 제시된 성과계획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포함

- 필요 시, 과제(사업) 목표 달성에(또는 예상되는) 어려움 해소를 위한 첨단기술 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제안

□ 캠퍼스 AI 네트워크 기반 혁신 AI 서비스 발굴 및 실증(2차 연도)

○ 실시간·현장형 혁신 AI 서비스 모델 실증

- 1차 연도에 구축된 개방형·지능형 AI-RAN 환경을 기반으로, 피지컬 AI 등 혁신 AI 서비스의 필요성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시나리오 4종 이상을 제시하고 실증**하여야 함

※ 1) 발굴한 혁신 AI 서비스 모델을 바탕으로(참조하여) 적용 범위 확대, 서비스 고도화, 운영 안정화를 추진, 2) 피지컬 AI 기기, AI 모델, 서비스 시나리오, 장애 대응,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체계를 포함하여 지속 운영 가능한 서비스 모델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

- 수요처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되, 국민 편의·안전 체감 효과 또는 기업 경쟁력 제고 효과가 있는 시나리오로 제안하여야 하며, AI-RAN 기반 초저지연·실시간성 검증이 가능한 공간 대상
- 통신 관련 전문가,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서비스 실증(AI on RAN) 과 통신 성능 향상(AI for RAN)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국내외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피지컬 AI 서비스 특성에 적합한 통신 성능 향상 대상 영역을 발굴하여야 함

○ AI-RAN 기지국 및 혁신 AI 서비스 모델의 인공지능 연산 처리 특화 성능 시험·검증

- AI-RAN 기지국 및 혁신 AI 서비스 모델의 기술 성숙도를 고려하여,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시험·검증 시나리오와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2차 연도 등 필요 시 'AI 기반 개방형 5G-A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Korea OTIC' 등 전문가·대학 연구소·공인 시험기관과의 컨설팅 등 협력방안을 포함할 수 있음
- 구축된 AI-RAN 기지국 및 혁신 AI 서비스 모델에 대하여 기본 기능과 연산 처리 성능 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지국은 지연, 처리량, 데이터 손실, 커버리지, 장시간 안정성, GPU 자원 활용

변화 등을, 서비스는 기능 동작, AI 모델 정확도, 처리시간, 연산 응답성 등을 포함하여 검증하여야 함

- AI-RAN의 네트워크 성능 및 AI-RAN 기반 AI 응용서비스 성능을 기존 제품·서비스와 비교·검증하여 성능 향상 효과와 운영 효율성을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해야 함

※ 1) AI-RAN 적용 전·후 및 기존 제품·서비스 대비 성능 비교 목표 설정, 2) 네트워크·서비스 핵심 성능지표(KPI) 기반 정량 검증, 3) 서비스 요구사항을 반영한 검증 시나리오, 방법론 및 시험체계 마련 등

□ 캠퍼스 AI 네트워크 확산 및 고도화(2차 연도)

○ 캠퍼스 AI 네트워크 확산 모델 수립 및 적용 확대

- 1차 연도 시범망 구축 및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캠퍼스 AI 네트워크의 확산 대상, 적용 유형, 구축·운영 모델을 구체화하고 추가 확산 방안을 제시·수행
- 이 경우 교육기관 유형, 서비스 수요, 커버리지 규모, 운영주체, 활용 시나리오 등을 고려하여 재현 가능하고 확산 가능한 참조 모델을 마련함

※ 1차 연도에 구축한 이음5G 서비스 커버리지를 감안하여, 캠퍼스 전체 등 전년 대비 최소 50% 이상 확장된 구역으로 제시

○ AI-RAN 인프라 및 기지국 아키텍처 고도화

- 1차 연도에 구축한 AI-RAN 기지국, 가속자원, 클라우드 플랫폼, 오케스트레이션 기반 제어체계를 바탕으로 성능, 확장성 및 운영 유연성을 고도화
- 복수 거점의 엣지·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자원을 통합 운영하는 분산형 엣지·클라우드 아키텍처 기반의 고도화 방안을 포함

- AI for RAN 및 AIOps 기반 운영자동화 고도화
 - 1차 연도에 검증한 AI for RAN 및 AIOps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 성능 향상, 장애 예측, 품질 최적화, 운영 효율화 기능을 고도화·내재화하여야 함
- 상호운용성·표준화·확장성 검증 심화
 - 1차 연도에 확보한 AI-RAN 상호운용성 및 종단 간 연동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멀티벤더 수용성, 타 장비·솔루션 연계성, 확장형 구조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심화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성과 확산, 사업화 및 해외 수출기반 고도화
 - 1차 연도 성과를 바탕으로 리서치 보고서, 전시·홍보, 국내외 협력 활동을 확산 단계에 맞게 고도화하고, 후속 실증, 사업화, 해외 협력 및 수출 연계 기반을 강화하여야 함
 - 특히 국내 AI-RAN 기술·제품의 신뢰성 확보, 적용 레퍼런스 축적, 해외 협력 채널 발굴을 통해 K-AI 네트워크의 확산 및 해외 수출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Ⅲ. 과제 제안

□ 과제 지원사항

○ 과제명: 캠퍼스 AI 네트워크 실증

※ '2026년 K-AI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한 하위 과제임

○ 지원 대상: AI-RAN 장비·솔루션과 혁신 AI 서비스의 실증환경 구축·운영이 가능한 1개 참여주체(또는 컨소시엄)를 대상으로 과제 공모 및 평가·선정

※ 동일 공고 내에서는 다른 컨소시엄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지원주체는 컨소시엄 구성 기관·기업 중 최소 1개 이상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하는 5G 특화망 구축·운영 방식에 따라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지원 기간: 협약일~'26.12.15.(1차 연도 기준, 2차 연도는 '27.1.1.~'27.12.15.)

- 1차 연도('26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협약, 결과평가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2차 연도('27년)에도 계속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

- 다만 본 사업 및 과제의 계속 지원 여부·규모·내용은 정책 및 예산 확보 상황, 전년도 수행결과 및 차년도 수행계획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원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

○ 지원 규모: **22억 원 내외**(1차 연도 지원금 기준)

- 지원금은 공모 평가 및 과제 조정 결과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2차 연도 지원 규모도 22억 원 내외, 다만 평가 결과 및 정부 예산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별도의 2차 연도 협약 체결 필요)

○ 지원 방식: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 총 과제비는 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합산하며, 민간부담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최소 기준을 설정함*

- * 부담기준 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금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민간부담금으로 간주함
- 전체 지원금(연구개발비) 비율은 100분의 50 이하(전체 지원금과 민간 부담금을 1:1 비율로 매칭(민간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구성))
- ※ 수행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민간부담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전체 지원금 비율 산정에 해당하지 않음)
- ※ 비영리기관은 민간 부담 의무가 없으며, 이는 현금부담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 ※ 수요기관은 컨소시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수행기관 지위를 가질 수 없음(전체 지원금에 따른 민간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
- 현금부담 비율은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은 100분의 10 이상,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은 100분의 20 이상,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공기업·지방공사 또는 대기업 등)은 100분의 30 이상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 지원 및 수행 절차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과제 선정평가 및 심의·조정 절차를 거쳐, 선정된 컨소시엄은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
- 지원금은 과제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과제비는 협약 체결일 이후부터 집행할 수 있음(1차 연도 기준)

- 과제비 정산

- 과제비 정산은 회계연도에 따라 1년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담기관이 지정한 위탁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반납하여야 함
- 또한 수행기관은 과제비 편성 시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탁정산수수료를 포함하여 반영하여야 함

□ **과제 추진일정(안)**

- '26.5월: 과제 공고
- '26.6월: 제안서 접수
- '26.6월: 1) 제안서 평가 및 선정, 2) 과제 조정 및 협약
- '26.7월: 과제 착수보고회 개최
- '26.10월: 과제 중간보고회 개최
- '26.12월: 과제 결과보고회 개최
- '27.1월: 1) 1차 연도 과제비 정산 및 반납, 2) 결과평가

□ 과제 선정방안

○ 과제 지원 자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 관련 지침상 수행계획서 검토·평가 단계의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전담기관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현재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전담기관 지원사업과 관련한 정산금, 환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 또는 기술료를 미납하고 있는 경우
- 또한 과제 선정 및 협약 확정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 제안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 제안서상 주요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안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 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 시한 내 과제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 기관의 지식재산권(IPR) 저촉으로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정부의 정책 또는 예산 사정 등으로 관련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경우
- 접수 마감일 이후라도 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안기관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 취소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다

○ 과제 선정 방법과 절차

- 1단계: 사전검토

- 사전검토는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라 실시
- 수행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구비요건, 제출서류, 신청 자격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및 공고상 기준에 따라 검토

- 2단계: 제안서 평가

- 본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 운영지침'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 개발사업 관리지침' 을 따름

- 3단계: 과제 심의·조정

- 선정된 제안사를 대상으로 과제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행내용, 수행범위, 추진일정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심의한 후 조정·확정할 수 있다
- 과제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협약 체결을 추진하며, 선정된 제안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선정된 컨소시엄은 협약 체결을 전제로 지원금 지원 및 과제 수행 자격을 부여받는다

- 4단계: 협약 체결 및 과제비 지급

- 제출된 수행계획서(제안서)는 평가 및 조정 절차를 거쳐 확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담기관과 수행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 지원금은 협약 체결 후 70%, 중간보고 결과를 반영한 후 30%를 지급

○ 과제 신청서(제안서) 평가표(안)

구분	평가 항목 및 기준	배점
과제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20)	해결하려는 현장 문제, 수요처, 적용 환경 및 목표의 명확성, 타 사업과의 차별화 전략, 재원확보·운영주체 등 과제 기간 이후 운영고도화 계획 타당성	6
	서비스 커버리지 확장 및 혁신 AI 서비스 발굴·실증 계획의 우수성, 무선망 지능화, AI·RAN·컴퓨팅 자원 통합운영, AI 서비스 실행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통합전략의 타당성	8
	단계별 추진 로드맵, 일정, 위험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6
기술성 및 구현 가능성 (20)	통합 아키텍처의 완성도: RAN, 클라우드/엣지, 데이터·모델 파이프라인, 제어 루프, 오케스트레이션 구조의 정합성	8
	표준 및 개방형 구조와의 정합성: 3GPP, O-RAN, SMO/RIC, API 연계, 멀티벤더 확장성 등	5
	보유기술의 성숙도, 신뢰성 및 과제 기간 내 구현 가능성	4
	국산 장비·솔루션 활용의 실질성 및 수출 기반 마련 등 기여도	3
실증 설계 및 검증 신뢰성 (20)	실증 시나리오의 현실성: 실제 운영환경 반영 여부, 다중 셀/이동성/트래픽/서비스 조건의 적정성	6
	기준선(Baseline) 및 정량 KPI 설정의 적절성: 성능 목표, 측정 방식, 성공 판정 기준의 명확성	4
	시험·검증·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계획의 구체성, 객관성, 통계적 타당성	6
	결과의 재현성, 타 환경 확장성, 상용 운영 전환 가능성	4
사업성·시장성 및 성과확산 (15)	수요기관·고객·실증 현장 확보 수준 및 도입 가능성	4
	경제성 및 운영효율 개선 효과: OPEX/TCO 절감, 전력 효율, 자동화 수준, 장애 대응 효율 등	5
	서비스 구조 및 수익(운영)모델의 구체성, 파트너·생태계 연계 가능성	3
	성과확산, 레퍼런스 확보, 국내외 확장 및 상용화 전략의 구체성	3
수행역량 및 운영체계 (15)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기관별 역할 분담의 명확성 및 향후 지속가능성	4
	사업관리 체계, 의사결정 구조, 일정·리스크·품질관리의 체계성	4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유사 수행실적	4
	운영·유지보수, MLOps/DataOps, 모델 업데이트 및 장애 대응 계획	3
보안·신뢰성·안전 및 ESG (5)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호, 모델 무결성, 접근통제, 관련 법규 준수 계획의 적절성	2
	서비스 연속성 확보, 장애 시 Fallback, 현장 안전, 윤리성, 상생협력 및 ESG 고려의 적절성,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기여 등	3
예산편성의 적절성 (5)	예산 구성, 세부 산출 근거, 비용 규모, 자산 재사용 계획, 장비·SW 조달, 공급망 계획의 현실성 및 향후 확장 시 규모 및 비용구조의 적정성	5
평가 점수 계*		100

*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부정당 제재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30점을 감점

□ 과제 신청방법

- 일정 및 접수처 등 구체적 과제 제안(신청) 방법은 별도 공고를 따름
- 과제 제안과 관련한 문의처는 아래와 같음
 - 과제 내용 관련: NIA 지능형네트워크단 통신서비스팀(mincheol@nia.or.kr, 053-230-1705)
 - 제안서(신청서) 제출 관련: 공고문 참조
- 과제 제안서(신청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문에 사용한 영문 약어와 전문용어는 별도의 표를 작성하여 포함하여야 함
 - 제안서는 별첨의 공모과제 신청서(제안서) 양식을 참고하되 과제 제안 내용에 맞게 양식을 수정·편집하여 자유로이 작성할 수 있으며, 구체성·가시성 확보를 위해 파워포인트 등을 활용해도 무방하나 PDF 형식 단일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기술 설명자료 등 작성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안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을 활용한 경우에는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한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로 작성하여야 함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급적 공모과제 신청서(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 관련 자료는 해당 절에 첨부하여야 함

- 특히, 제안기술 부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포함하여 작성하거나 별도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재함
- 제출된 공모과제 신청서(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전담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협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공모과제 신청서(제안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안 참여 세부 컨소시엄 구성
 - 적용 기술 및 참여기관
 - 도출 성과
 - 제안사의 특장점 및 차별성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분임 안전보건책임자는 사업장 환경을 고려하여,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협약 체결 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제 제안서(신청서) 작성 규격
 - 과제 제안서(신청서)는 A4 세로 형식, 제안 발표자료는 A4 가로 형식의 PDF 파일로 작성하여야 함(150쪽 내외 권장)

○ 과제 제안서(신청서)의 효력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협상 과정에서 전담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협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다만, 협약서에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함
- 전담기관은 협상 과정에서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공모과제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공모과제 신청서의 내용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과제 관리방안

○ 과제 수행의 관리

- 본 과제의 협약 체결 및 수행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1호) 및 관련 부속지침을 적용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전담기관의 관련 규정 및 별도 특약에 따라 관리함

○ 과제 수행 유의사항

- 업무보고
 - 주·월간 보고 등 사업추진 관련 회의는 대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하며, 대면회의는 전담기관 소재지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변경관리
 - 과제 추진기간 중 과제목표, 과제내용·범위, 예산, 참여인력 등 주요 수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담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은 후 변경된 계획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서면 제출 계획과 다르게 수행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임의 변경으로 간주하여 변경 승인이 제외될 수 있고, 정산 시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 현장점검
 - 전담기관은 중간·최종 결과자료 및 중간·최종 정산자료와 연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
- 위탁용역
 - 위탁용역은 명확한 선정절차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과제조정 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위탁용역은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위탁용역 추진 시에는 위탁용역 계획, 수행기간, 소요예산 등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하도급은 금지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9조에 따라 위탁용역비는 총 사업비의 28.57% 이내로 산정
- 예산 편성
 - 과제 예산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
 - 수행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기관이나, 수행기관의 임직원이 임원으로 있는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등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집행은 불인정함

- 자기거래 또는 기관 소속 인력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수행 계획서에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과제비의 관리: 과제비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별도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본 과제와 무관한 목적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불인정 및 환수 대상이 됨
- 과제비의 정산
 - 과제 종료 후에는 과제수행계획서 및 예산산출 내역 등에 근거한 사후정산을 통해 과제 수행금액을 확정하며, 회계·정산은 전담 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은 과제비 내에서 부담
 - 또한 컨소시엄 내 모든 수행기관은 회계·정산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과 정부 예산집행 관련 지침·계약예규 및 전담기관의 관련 규정과 서식을 따름
- AI 윤리교육
 - 제안사는 사업추진 기간 내(사업 종료 1개월 이전까지) NIA가 제공하는 AI 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 단, NIA 제공 교육 이외에 이에 준하는 AI윤리교육을 이수할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대체 가능함
 - 과제관리자(PM) 및 참여인력 전체가 이수하여야 하며, 참여인력 변경 시 1개월 이전 변경된 자는 교육 대상자에 해당됨
- 과제 수행 결과평가
 - 수행기관은 결과보고서를 과제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전담기관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의 수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음(평가 기준 등 세부 내용은 별도 안내)

○ 과제 수행 결과물의 귀속

- 과제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다만,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유형적 결과물의 귀속은 상호 협의
- 과제수행 결과로 구축된 시설물, 시제품 등 사업수행 결과물은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유지하여야 함
 - 성과 활용기간(마지막 과제 협약 종료 후 2년) 내 유형적 결과물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수행과정 및 결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기타 제반 권리 등 무형적 결과물의 귀속은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름
 - 수행기관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 성과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국가안보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본 과제의 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관련 자료 제출, 실적 자료 작성, 증빙자료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제재 조치와 보안 준수 사항

- 제출한 수행계획서, 신청서류 및 기타 자료가 거짓 또는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협약 해약, 사업비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과제 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과제수행 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대하여 전담기관이 추진하는 차년도 동일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과제 성과관리 및 실증환경 등 결과물의 의무 유지 기간(마지막 과제 협약 종료 후 2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제비 환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과제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취득한 모든 자료는 제안 관계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자료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전담기관에 안내하여야 함
-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과제자료 유출 등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시행을 하여야 함
-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 (1)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 (2)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3)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4)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6)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7)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 등의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9)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0) 계약해제·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1)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2)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3)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 (14)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15)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 (16)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 (17)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 (1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계약 안내문

본 공모는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추진되며, 입찰·낙찰, 협약체결 또는 협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위반이 발생할 때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 및 부당이득의 환수, 입찰·낙찰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이해충돌방지법 5조(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및 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에 근거,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사업과 관련된 정부위원회(공무수행사인), 사업심의위원 등의 이해충돌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2. 청탁금지법 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근거,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등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3. 국가계약법 5조 2(청렴계약)에 근거, 금품·향응(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알선·청탁을 통하여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NIA 국가 인공지능 사업추진 윤리원칙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능정보기술로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성장과 디지털 기반 ESG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국가 인공지능 사업을 기획 및 실행하는 단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원칙을 선포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AI 사업기획을 위한 윤리원칙

-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공지능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장기적인 비전과 실행과제를 제안한다.
-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을 기획하고 정책을 개발할 때 인간에게 이로운 인공지능의 활용을 최우선으로 한다.
-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산·학·연·관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하나, AI 사업실행을 위한 윤리원칙

-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인간의 존엄성 보장, 국민의 편익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도록 고려한다.
- 우리는 인공지능이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편향되지 않도록 개발한다.
-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회보편적인 제도와 윤리규범 안에서 개발·활용하며,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나, AI 사업확산을 위한 윤리원칙

-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며, 국제사회와도 활발히 협력해야 한다.
-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추진의 결과물이 사회, 경제, 문화,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사업 개선에 반영한다.
-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성과가 창출한 경제사회적 가치가 널리 공유되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임직원 일동